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 장기고배당40 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**변경 사항** : 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②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

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3. 4. 20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		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재 정정 안내	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위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 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 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할 수 있습니다.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)이 <u>경과하였음에도</u>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위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 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 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		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2. 28.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 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	세액공제 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을 합산하여 연 <u>900 만원</u> 한 도로 12%(<u>종합소득금액 4.5</u>



트러스톤자산운용

		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서 공제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 득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득세 별도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 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※ 지방소득세 별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
가. 운용전문인력		2023 3 31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
나. 운용중인 집합투 자기구에 관한 사항		2023 3 31. 기준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3 년 경과내역 삭	[채권]
다. 운용전문인력 최 제		책임운용역 : 문성호 <삭 제>
근 변경 내역		(2015.10.22~2020.01.08)
		부책임운용역 : 진재식
		(2017.07.27~2020.01.08) <삭 제>
5. 운용전문인력	최근 3 년 경과내역 삭	-
다. 운용전문인력 최 제		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
근 변경 내역		자신탁 [채권]
[이 투자신탁이 투자		책임운용역 : 문성호 <삭 제>
하는 모투자신탁의		(2014.08.29~2020.01.08)
운용전문인력 최근		부책임운용역 : 진재식
변경 내역]		(2017.07.27~2020.01.08) <삭 제>
6. 집합투자기구의 듀레이션 폭 확대	트러스트 중기채권 증권모투	트러스트 중기채권 증권모투
구조	자신탁 [채권]	자신탁 [채권]
라. 모자형 구조	*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:	*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:
[이 투자신탁이 투자	기본적으로 듀레이션을 1~1.5	기본적으로 듀레이션을 1~2
하는 모투자신탁에	년을 유지하되 효율적인 투자	년을 유지하되 효율적인 투자
관한 사항]	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	와 적극적인 시장위험 관리로
	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.	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	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	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
투자대상	신탁 [채권]	신탁 [채권]
	준 개정사항 반영	

가. 투자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	〈신 설〉	증권대차거래 거래 목적 등 주석 기재
9. 집합투자기구의 듀레이션 폭 확대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 험관리	1)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 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%이하를 투자하고, 투자신탁재산의 40%이하를 배당주에 주로 투 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 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 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 다. 또한 운용 규모 및 시장 상황 에 따라 듀레이션 <u>1.5 년</u> 수준 인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 자신탁[채권]과 듀레이션 4.5 년 수준인 트러스트중장기증 권모투자신탁[채권]의 투자 비중을 조절합니다.	1)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안정적인 수익 을 추구하기 위하여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80%이하를 투자하고, 투자신탁재산의 40%이하를 배당주에 주로 투 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 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 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 다. 또한 운용 규모 및 시장 상황 에 따라 듀레이션 <u>1~2 년</u> 수 준인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 투자신탁[채권]과 듀레이션 4.5 년 수준인 트러스트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의 투자 비중을 조절합니다.
	☐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 략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 : 듀레이션 <u>1~1.5 년</u>	☐ 채권 모투자신탁의 투자전 략 트러스트중기채권증권모투자 신탁[채권] : 듀레이션 <u>1~2 년</u>
13. 보수 및 수수료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에 관한 사항 기준으로 기재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 용	-	<u>2023. 2. 28.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 세에 관한 사항 영 나. 과세	[연금저축계좌 과제 주요 사 항] * 공제제도	[연금저축계좌 과제 주요 사 항] * 공제제도

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: <u>첨부 참조</u>	: <u>첨부 참조</u>
	* 분리과세한도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<추 가></u>	* 분리과세한도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<u>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단, 23.1.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</u>
	*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<u><추 가></u>	*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<u>: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5) 퇴직연금제도의 세계	③ 세액공제(2015. 1. 1. 부터)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(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)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300 만원 이내)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외됩니다. 상에서 제외됩니다.	③ 세액공제(2023. 1. 1. 부터):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12%(종합소득금액 4.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.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%)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 가. 요약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	<u>증권대여 및 증권차입에 따른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 주식 기재</u>
	<u><신 설></u>	<u>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, 주식의 매매회전율 기재</u>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가. 회사개요			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 24 기(2021.12.31)</u>	<u>제 25 기(2022.12.31)</u>
다.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		<u>제 23 기(2020.12.31)</u>	<u>제 24 기(2021.12.31)</u>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3. 3. 31. 기준</u>
라. 운용자산 규모			

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반영	개정사항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	(2) 수시공시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 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 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 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
나. 수시공시			

[첨부]

[변경 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대상 포함	50세 이상 세액공제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대상 포함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	400만원		600만원		15%



트러스트자산운용

(5.5천만원 이하)	(700만원)	(900만원)	
1억원 이하			
(1.2억원 이하)			12%
1억원 초과	300만원		
(1.2억원 초과)	(700만원)		
※지방소득세 별도			
※50 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			
- 적용시기 : 2020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			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			
- 적용제외 대상 : ① 종합소득금액 1 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 억원 초과자			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 천만원 초과자)			

[변경 후]

종합소득금액 (총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.5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	15%
4.5천만원 초과 (5.5천만원 초과)	600만원 (900만원)	12%

※지방소득세 별도

<삭 제>

<신 설> ※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: 2023.1.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